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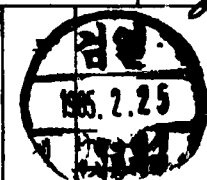


# 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재개 30320-51	(전화번호 )	전결 규정	조항 전결사항	
처리기간	시 장				
시행일자	85. 2				
보존연한	1985. 2. 25 도시계획국장				
보조기관	도시계획국장				법무담당관(고시안심사) <b>김시필</b>
	재개발과장				재개발행정계장 <b>신</b>
	재개발사업2계장				재개발계획계장 <b>홍</b>
기안책임자	김진환	85. 2. 22	재개발사업1계장	<b>홍</b>	
경유수신참조	각안참조	85. 2. 25 <b>도시계획위원회</b>			
제목	도심재개발 사업 계획 변경 결정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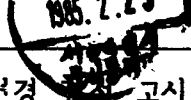

**(제 1안) 내부결재**

1. 당사에서 추진중에 있는 도심재개발구역중 서린구역 제12지구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당시 제 5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한바, 별첨 회의록과 같이 의결 되었고 건폐율이 20% 초과하여 변경 하므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 58조의 3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도시재개발법 제 5조,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별안과 같이 고시코저 합니다.

**가. 사업계획 변경 결정 내용**

구분	대지면적	건폐율	용적율	층 수	용도	비고
당초	6,560 <sup>m<sup>2</sup></sup>	32.1%	670%	15/3	업무시설	관인
변경	6,564.7 <sup>m<sup>2</sup></sup>	39.1%	630-700%	25/5	업무및판매시설	옥탑2개층 포함

**(제 2안) 고시 ( )**

서울특별시 고시 제	호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>발부서</td> <td>1985. 2. 22</td> <td>제 22호</td> </tr> <tr> <td>담당자</td> <td>법제처장</td> <td>법무담당관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전결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발부서	1985. 2. 22	제 22호	담당자	법제처장	법무담당관		전결	
발부서	1985. 2. 22	제 22호										
담당자	법제처장	법무담당관										
	전결											
도심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고시												

1. 도시재개발사업 서린 제12지구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

<p>도시재개발사업 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, 8조, 동법시행령 제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</p>	
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	
<p>1985. 2</p>	
<p>서울특별시</p>	
<p>가.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 조서 (제 1안 "가"항 이기시행)</p>	
<p>나. 관계도면 : 별첨 (생략)</p>	
<p>(제 3안)</p>	
수신	총무처장관, 공보관
제목	관(시)보 게재 의뢰
<p>1.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(시)보 게재를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
가. 게재종별	: 고시문
나. 게재건명	: 서울도시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
다. 게재근거	: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
첨부	: 고시문 사본 2부.
<p>(제 4안)</p>	
수신	건설부 장관
참조	도시개발과
제목	동 건
<p>1. 도시재개발사업 서린 제12지구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을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고시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 5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보고 합니다.</p>	
첨부	: 고시문 사본 1부. 끝.

(제 5안)

수신 중구청장

참조 도시정비과장

1. 서울도시재개발사업 서린구역 제12지구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 하고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일것.

첨부 : 고시문 사본 1부

(제 6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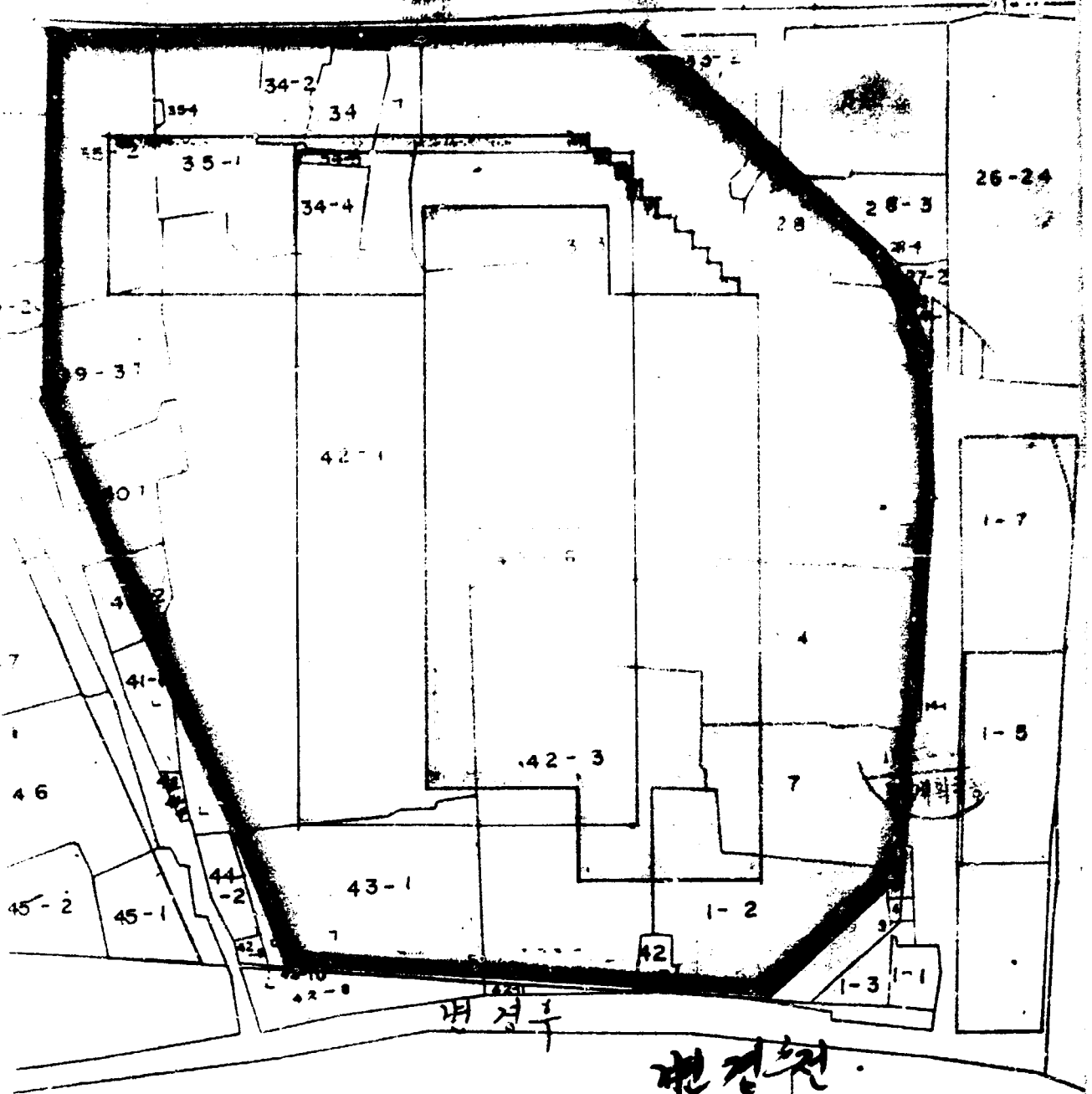
수신 강남구 논현동 142 (주) 영풍 대표이사 최 세 인

제목 등 건

1. 귀사에서 당시에 변경 요청한 서린구역 제 12지구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변경 결정 하였기 통보하오니 재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.

첨부 : 고시문 사본 1부. 끝 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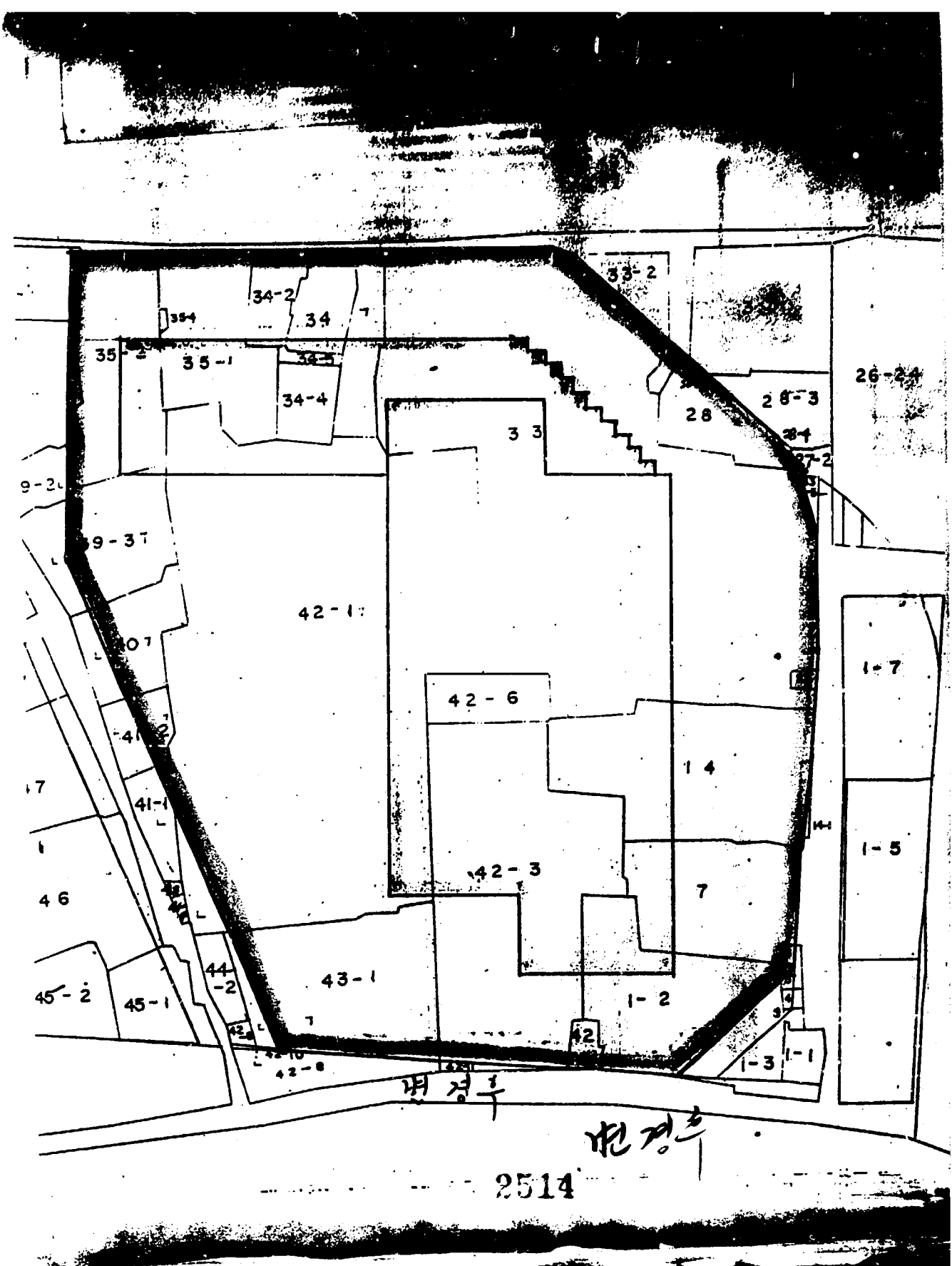
2512



부속

대정원

251131



변경후

변경후

2514

도시 계획 위원회의 의결  
===== ( '84. 제5차 위원회 제2차 숙기본회의 ) =====

지 순 록

2. 장 소 : 회의실

3. 안 건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 결정 의

4. 참석위원

위원장

이상연

위원

김형만

"

신동호

"

김원

"

오휘영

"

이동배

"

도철웅

"

지홍원

"

박상완

"

이천주

"

장현우

"

김민식

"

최종무

"

이영환

"

이동

간사

도시계획과장

서기

도시행정계장

5. 불참위원

위원

이광토

"

김안제

"

김경목

"

"

"

최상근

6. 기타참석 : 시설계획과장, 재개발과장, 주택개량과개량1계장, 중립건설본부장, 시설계획1계장, 시설계획2계장, 가로계획2계장, 재개발계획계장

- 제20안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및 변경 결정
  - 보광동 75-1 도로폐지
  - 한남동 107-8 자각정비
- 제28안 반도특정지구 정비지구 도시계획시설(시장) 변경 결정
- 제31안 도심재개발사업 남대문 3지구 사업계획 변경 결정
- 제32안 " 서린 6지구 "
- 제33안 " 서린 12지구 "
- 제34안 " 다동 12지구 "
- 제35안 " 회현4-1지구 "
- 제36안 " 마포로 3구역 5지구 "
- 제37안 " 마포로4구역 3-2지구 "
- 제38안 " 다동 16지구 "
- 제39안 " 마포로 5구역 4지구 사업계획 결정
- 제40안 " 다동19지구 사업계획 변경 결정
- 제41안 " 을지로 2가 12지구 "
- 제44안 " 을지로 2가구역 "
- 제46안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 결정
  - 3.1 근린공원
  - 현충묘지 공원
- 제47안 도시계획시설(주변환경재개발)구역 지정 및 변경
  - 방배 1구역
  - 천호 3구역
  - 시당 2구역

- 2/ -

25 17



이동위원

부연해서 당부하고 싶습니다. 지난 10년간 총로 읍지로 읍원을 지정  
을 허용치 않았는데 허용하게된 배경과 동기 그리고 재개발사업의 진행  
근데근데 백화점을 시찰하겠다고 신청할 경우 본위원회에서 위원회의  
기본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도시계획위원회의 (토의가 된 후) 의결  
같습니다.

위원장

좋은 의견입니다.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계획  
대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.  
본 사안은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시간을 두고  
다음 위원회에서 재검토 하는것이 좋겠습니다.

일 동

동의 (재심의)

(제31안)

도심재개발사업 남태릉 3지구 사업계획 변경 결정

재개발과장

제안설명 (심의안에 의함).

소위원회 심의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.

일 동

동의 (가결)

(제32안)

서틴6지구 사업계획 변경 결정

재개발과장

제안설명 (심의안에 의함)

소위원회 심의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.

일 동

동의 (가결)

(제33안)

서틴12지구 사업계획 변경 결정

재개발과장

제안설명 (심의안에 의함)

소위원회 심의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.

일 동

동의 (가결)

(제34안)

다동 12지구 사업계획 변경 결정

재개발과장

제안설명 (심의안에 의함)

소위원회 심의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.